

수원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가단667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2023. 10. 17.

판결 선고2023.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3.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2년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전달하거나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 명의로 된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같은 달 20. 13:03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C병원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고를 만나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3. 4. 12.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23고단290호),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3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편취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형사처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민철

1) 원고는 소장에 사건명을 '부당이득금'으로 기재하면서 '청구원인'에도 '부당이득'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의 내용에는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 또한 제1회 변론기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하여 판단한다(부당이득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